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

Compliance Program Regulations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이하, 'CP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회사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 범위)

본 CP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용어 정의)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4. '최고의사결정기구'는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자율준수운영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7.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1절 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는 CP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②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CP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 또는 자율준수운영팀의 장은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으며,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반기 1회)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5.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6.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7.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8.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
9.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10.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율준수운영팀)**

- ① 자율준수운영팀은 회사의 법무팀으로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주관한다.
- ② '자율준수운영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0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회사의 지원)**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 제12조(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회사의 CP규정, 사규, 각종 지침 및 자율준수편람 준수
2. 고객이나 협력업체,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준수운영팀과 협의 또는 제보
4.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이수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등 준수

### 제3장 CP의 운영

####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 제13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 제14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사항과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분기별 1회), 신규입사자 교육(채용 시), 수시 교육(위반행위 발견 또는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④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제3절 내부감시체계(법 위반 모니터링 제도)**

### **제16조(법 위반 모니터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 조사
  2. 위 1항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3.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

### **제17조(내부고발시스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운영팀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 **제18조(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하여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사내 상별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 및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①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 (부서)에 대해서 사규 상별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임직원 및 팀 (부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사규 상별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절 운영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 **제20조(운영성과 평가)**

- ①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운영성과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21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상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2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기 타**

### **제23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